



데이터로 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최 경 원

「전기통신사업법」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이하 OTT)'가 빠르게 확산하였다. OTT는 셋톱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송, 영화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OTT의 이용 증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입법동향을 소개한다.

OTT의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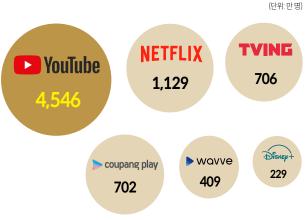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넷플릭스·티빙 등의 유료 OTT 이용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3,000만 명을 넘고, 2022년 일시 감소했으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3,175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유·무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장 많이 이용한 OTT는 유튜브였다. 2024년 4월 기준, 4,546만 명이 유튜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넷플릭스가 1,129만 명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OTT 이용자 수



- * 주요 OTT(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이용자 수(1달간 앱을 사용하는 순 이용자 수)를 합산한 수치임
- ** 유튜브 이용자는 해당 통계에서 제외함

2024년 4월, 주요 OTT별 월간 이용자 수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2024.5)

* 유튜브 이용자는 유 · 무료 이용자 수를 합산한 수치임

하루 평균 OTT 이용 시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 OTT 이용 시간은 2019년 주중 57.7분, 주말 63.7 분이었지만, 2023년 주중 87.2분, 주말 107.4분으로 늘어났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각 연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2019-2023)

발행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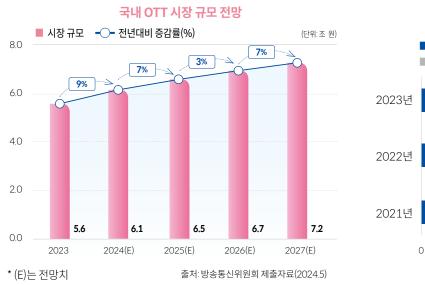
작성자 최경원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 02-6788-4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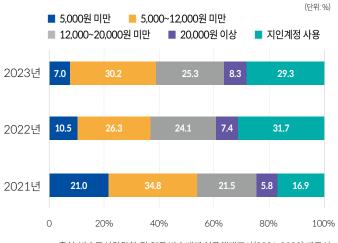


OTT 시장 규모

OTT 시장 규모는 2023년 5.6조 원에서 2027년에는 7.2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OTT 이용 확대에 따른 월 이용요금도 변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사자의 21.0%가 월 5,000원 미만을 유료 OTT 이용요금으로 결제하였으나 2023년에는 7%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2021년 월 12,000~20,000원 결제 비율은 21.5% 이었으나, 2023년에는 25.3%까지 증가하였다. 지인계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1년 16.9%에서 2023년 29.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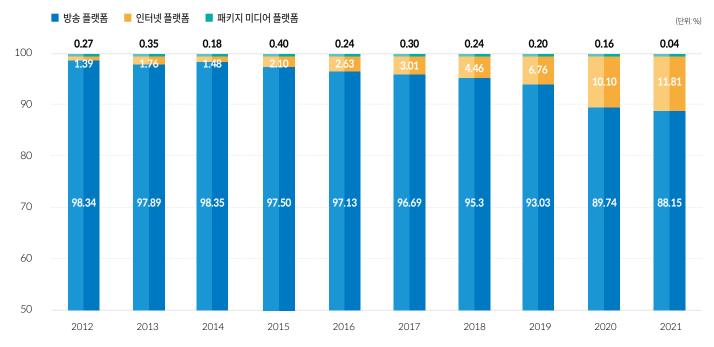
유료 OTT 1인당 월 이용요금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각 연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2021-2023) 재구성

시청 플랫폼의 비중 변화

OTT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플랫폼의 비중도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등의 시청 플랫폼 비중은 2012년 방송 플랫폼이 98.34%로 압도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88.15%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OTT·와이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이 1.39%에서 11.81%까지 증가하였다.



^{*} 방송 플랫폼: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TV 시청 관습의 변화 및 영상콘텐츠 이용행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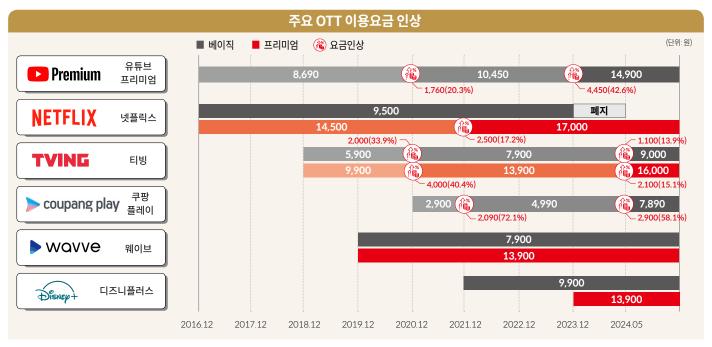
^{**} 인터넷 플랫폼: 유·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OTT 단말기/앱

^{***} 패키지 미디어 플랫폼: CD/DVD 등의 디스크 재생, 저장매체 등

2024-5호(통권 제17호)

OTT 이용요금 인상

주요 OTT사업자는 시장 내 경쟁 심화, 콘텐츠 제작비 상승 등을 이유로 월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3년,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이용요금을 42.6% 인상하였다. 넷플릭스는 2021년 신규가입자의 프리미엄 요금을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17.2% 인상하였고, 2023년에는 저가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티빙도 2024년부터 프리미엄 요금을 13,900원에서 16,000원으로 15.1% 인상하였다.



* 베이직/프리미엄 요금제 신규가입자 앱 결제 기준(디즈니 플러스의 경우에는 스탠다드/프리미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각 연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2023) 재구성

- **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 *** 유튜브의 경우, 안드로이드 요금제 기준
- ****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 결제 기준 요금임. 로켓와우 멤버십을 결제하면 쿠팡플레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음.

OTT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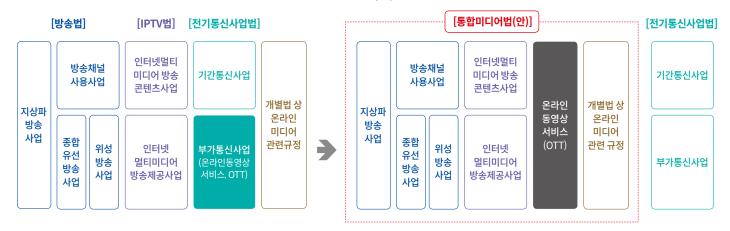
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OTT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있다. 2023년 주요 OTT사업자 3곳을 평가한 결과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보통', 웨이브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4.03.13.)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2호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 ② 미디어 공통규범 (이용자 보호 등) 정립, ③ 공정경쟁 촉진 및 국내 미디어 진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미디어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출자료(2024)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3. 30.]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 데이터 ·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 12. "부가통신역무"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 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6-2023).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각 연도)
- 방송통신위원회. (2019-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각 연도)
- 방송통신위원회. (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12). TV 시청 관습의 변화 및 영상콘텐츠 이용행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 https://www.mediastat.or.kr/(방송통계포털 홈페이지)



국회도서관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내법률정보과(02-6788-4766)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